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(생 략)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9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10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생 략)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7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8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생 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

	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제5영업일(자투자신 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 영업일)전일과 그 권리를 행 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2. (생 략)	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(자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)전일과 그 권 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</u> <u>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u>